##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353

발의연월일: 2024. 11. 7.

발 의 자:한정애·조 국·조인철

이학영 • 백승아 • 박홍근

송옥주·조정식·이수진

신정훈・김 윤・서영교

김준형 · 장철민 · 이용우

민홍철 · 한창민 의원

(17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반려견의 헌혈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혈액나눔동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고 있음.

하지만 해당 조항(제10조제2항제2호)을 살펴보면, 체액 채취 등을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으로 규정하고 있어 혈액나눔동물에 대한 체액 채취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실정임. 이에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혈액나눔동물에 대한 체액 채취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법률 제 호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단서 중 "예방 및 동물실험"을 "예방, 동물실험 및 다른 동물에 대한 혈액 나눔"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	②
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2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	
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	
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렁	물실험 및 다른 동물에 대한
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	혈액 나눔
다.	
	<u>.</u>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